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9~19p 빨간기	개념,공식-설명	<p>(1) 과징금 처분 및 금액 등</p> <table border="1"> <tr><td>구분</td><td>규정내용</td></tr> <tr><td>부과관자</td><td>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td></tr> <tr><td>처분대상</td><td>제조소등의 관계인</td></tr> <tr><td>부과요건</td><td>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td></tr> <tr><td>최고금액</td><td>2억 원 이하</td></tr> <tr><td>징수절차</td><td>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td></tr> <tr><td>체납과징금 징수절차</td><td>「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td></tr> <tr><td>과징금 산정기준</td><td>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td></tr> <tr><td>감경</td><td>규정내용 없음</td></tr> </table> <p>(2)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th> </tr> <tr> <th>처분대상</th> <th>요건</th> <th>최고처분금액</th> <th>과징금액 산정기준</th> <th>감경</th> </tr> </thead> <tbody> <tr> <td>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td> <td>영업(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td> <td>2억 원 이하</td> <td>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td> <td>없음</td> </tr> <tr> <td>소방시설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도급(계약)금액</td> <td>1/2</td> </tr> <tr> <td>소방시설관리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r> <td>방염업등록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전년도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수정 사유</p>	구분	규정내용	부과관자	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	처분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부과요건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최고금액	2억 원 이하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과징금 산정기준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감경	규정내용 없음	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과징금액 산정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 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p>(1) 과징금 처분 및 금액 등</p> <table border="1"> <tr><td>구분</td><td>규정내용</td></tr> <tr><td>부과관자</td><td>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td></tr> <tr><td>처분대상</td><td>제조소등의 관계인</td></tr> <tr><td>부과요건</td><td>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td></tr> <tr><td>최고금액</td><td>2억 원 이하</td></tr> <tr><td>징수절차</td><td>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td></tr> <tr><td>체납과징금 징수절차</td><td>「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td></tr> <tr><td>과징금 산정기준</td><td>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td></tr> <tr><td>감경</td><td>규정내용 없음</td></tr> </table> <p>(2)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th> </tr> <tr> <th>처분대상</th> <th>요건</th> <th>최고처분금액</th> <th>과징금액 산정기준</th> <th>감경</th> </tr> </thead> <tbody> <tr> <td>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td> <td>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사용 정지 처분을 같음</td> <td>2억 원 이하</td> <td>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td> <td>없음</td> </tr> <tr> <td>소방시설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도급(계약)액</td> <td>1/2</td> </tr> <tr> <td>소방시설관리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전년도의 연간 매출액</td> <td>1/2</td> </tr> <tr> <td>방염업등록업자</td> <td></td> <td>3천만 원 이하</td> <td>전년도 연간 매출액</td> <td>1/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표 이룬 오류</p>	구분	규정내용	부과관자	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	처분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부과요건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최고금액	2억 원 이하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과징금 산정기준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감경	규정내용 없음	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과징금액 산정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사용 정지 처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 원 이하	도급(계약)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액	1/2
구분	규정내용																																																																																																		
부과관자	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																																																																																																		
처분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부과요건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최고금액	2억 원 이하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과징금 산정기준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감경	규정내용 없음																																																																																																		
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과징금액 산정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 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구분	규정내용																																																																																																		
부과관자	시·도지사 : 위입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입																																																																																																		
처분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부과요건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최고금액	2억 원 이하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과징금 산정기준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감경	규정내용 없음																																																																																																		
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과징금액 산정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사용 정지 처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자가난방, 유사목적 :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 원 이하	도급(계약)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액	1/2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22p (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개념, 공식-설명	(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8)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치·거리</th> <th>제조소등 구분</th> <th>개수</th> <th>인적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동일구 내에</td> <td>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td> <td>7개 이하</td> <td rowspan="2">동일인이 한 경우</td> </tr> <tr> <td>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td> <td>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td> <td>5개 이하</td> </tr> </tbody> </table>	위치·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7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5개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치·거리</th> <th>제조소등 구분</th> <th>개수</th> <th>인적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동일구 내에</td> <td>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td> <td>7개 이하</td> <td rowspan="2">동일인이 한 경우</td> </tr> <tr> <td>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td> <td>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td> <td>5개 이하</td> </tr> </tbody> </table>	위치·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7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5개 이하		
		위치·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7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5개 이하																									
위치·거리	제조소등 구분	개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배관시설 등 위험물시설을 설치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7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동일구 내에 (근소간 300m 이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에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5개 이하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7">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td> <td>옥외탱크저장소</td> <td>30개 이하</td> <td rowspan="7">동일인이 한 경우</td> </tr> <tr> <td>옥내저장소</td> <td>10개 이하</td> </tr> <tr> <td>옥외저장소</td> <td>10개 이하</td> </tr> <tr> <td>암반탱크저장소</td> <td rowspan="4">제한없음</td> </tr> <tr> <td>지하탱크저장소</td> </tr> <tr> <td>옥내탱크저장소</td> </tr> <tr> <td>간이탱크저장소</td> </tr> </tbody> </table>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암반탱크저장소	제한없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7">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td> <td>옥외탱크저장소</td> <td>30개 이하</td> <td rowspan="7">동일인이 한 경우</td> </tr> <tr> <td>옥내저장소</td> <td>10개 이하</td> </tr> <tr> <td>옥외저장소</td> <td>10개 이하</td> </tr> <tr> <td>암반탱크저장소</td> <td rowspan="4">제한없음</td> </tr> <tr> <td>지하탱크저장소</td> </tr> <tr> <td>옥내탱크저장소</td> </tr> <tr> <td>간이탱크저장소</td> </tr> </tbody> </table>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암반탱크저장소	제한없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암반탱크저장소	제한없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지중층을 포함하여 행정에 56주 이하의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동일인이 한 경우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암반탱크저장소	제한없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p>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p> <p>각 제조소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p> <p>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수량의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선박주유취급소의 구조주유설비에 준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p>	<p>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p> <p>각 제조소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p> <p>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저장수량의 3천배 미만인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선박주유취급소의 구조주유설비에 준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p>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29~29p (5) 정기점검의 내용·점검자 및 기록·유지 등	개념, 공식-설명	(5) 정기점검의 내용·점검자 및 기록·유지 등	(5) 정기점검의 내용·점검자 및 기록·유지 등		
		<table border="1"> <tbody> <tr> <td>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td> <td>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body> <tr> <td>정기점검의 제출 (법제18조제2항)</td> <td>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정기점검의 결과보고 (법제18조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제출 (법제18조제2항)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7~37p 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문항_삭제	<p>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자격기준</th> </tr> <tr> <td>검사권자</td> <td>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 </tr> <tr> <td>검사 요건</td> <td>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 </tr> <tr> <td>출입·검사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td> </tr> <tr> <td>위반시</td> <td>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td> </tr> </table> <p>수정 사유</p>	구분	자격기준	검사권자	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p>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규정내용</th> </tr> <tr> <td>검사권자</td> <td>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td> </tr> <tr> <td>검사 요건</td> <td>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 </tr> <tr> <td>출입·검사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td> </tr> <tr> <td>위반시</td> <td>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td> </tr> </table> <p>표 이론 오류</p>	구분	규정내용	검사권자	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자격기준																																	
검사권자	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규정내용																																	
검사권자	사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검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시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87~87p (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	개념, 공식-설명	<p>(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도로경계선</th> <th>도로경계선</th> <th>고정유류설비</th> </tr> <tr> <td>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td> <td>4m이상</td> <td>2m이상</td> <td></td> </tr> <tr> <td rowspan="2">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td> <td>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td> <td>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td> <td>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td> </tr> <tr> <td>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td> <td>4m이상</td> <td>2m이상</td> </tr> </table> <p>수정 사유</p>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유류설비	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	4m이상	2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	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4m이상	2m이상	<p>(2)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불연재료의담</th> <th>도로경계선</th> <th>고정유류설비</th> </tr> <tr> <td>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td> <td></td> <td>2m이상</td> <td>4m이상</td> </tr> <tr> <td rowspan="2">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td> <td>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td> <td>높이 1m이상 설치</td> <td>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td> </tr> <tr> <td>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td> <td></td> <td>2m이상</td> <td>4m이상</td> </tr> </table> <p>표 이론 오류</p>	구분	불연재료의담	도로경계선	고정유류설비	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		2m이상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	높이 1m이상 설치	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2m이상	4m이상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유류설비																															
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	4m이상	2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	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4m이상	2m이상																															
구분	불연재료의담	도로경계선	고정유류설비																															
자동차등의점검장비를 행하는 설비		2m이상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 경우	높이 1m이상 설치	출입구가 고정유류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 것 담은 고정유류설비 4m이상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 경우		2m이상	4m이상																														
143~143p 번호 : 10	문제-본문	<p>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옥외저장탱크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p> <p>수정 사유</p>	<p>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p> <p>문제 오류</p>																															
144~144p 번호 : 15	문제-문항	<p>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 <p>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p> <p>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p> <p>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비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p> <p>수정 사유</p>	<p>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년 소방위</p> <p>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p> <p>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p> <p>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p> <p>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p> <p>문제 오류</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51~151p 번호 : 13	문제-문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55~155p 번호 : 04	문제-본문	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용사무실은 33m ² 이상이어야 한다.	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등 4인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용사무실은 33m ² 이상이어야 한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66~166p 번호 : 20	문제-본문	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용사무실은 33m ² 이상이어야 한다.	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등 4인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전용사무실은 33m ² 이상이어야 한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71~171p 번호 : 14	문제-본문	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단,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 ① 5.4m ³ ② 10.5m ³ ③ 21.3m ³ ④ 29.1m ³	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단,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 ① 5.4m ³ ② 10.5m ³ ③ 34.8m³ ④ 29.1m ³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82~182p 번호 : 10	문제-본문	<p>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p> <p>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p> <p>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186~186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p>2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p> <p>①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폭발력이 위로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가연성 증기 발생방지를 위하여 천장을 설치해야 한다.</p> <p>②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p> <p>③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해야 한다.</p> <p>④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p>	<p>2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p> <p>①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폭발력이 위로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가연성 증기 발생방지를 위하여 천장을 설치해야 한다.</p> <p>②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p> <p>③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해야 한다.</p> <p>④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p>
		수정 사유	문항 오류
188~188p 빨간키	문제-문항	<p>06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 <p>① 벽·기둥·바닥·보·서까래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p> <p>②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p> <p>③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p> <p>④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5m 이상이어야 한다.</p>	<p>06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 <p>① 벽·기둥·바닥·보·서까래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p> <p>② 제조소의 표지판은 한 변이 30cm, 다른 한 변이 60cm 이상의 크기로 한다.</p> <p>③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p> <p>④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5m 이상이어야 한다.</p>
		수정 사유	문항 오류
221~221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p>06 다음 위험물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p> <p>① 브로민산염류</p> <p>② 아조화합물</p> <p>③ 금속의 수소화물</p> <p>④ 질 산</p>	<p>06 다음 위험물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p> <p>① 브로민산염류</p> <p>② 황화인</p> <p>③ 금속의 수소화물</p> <p>④ 질 산</p>
		수정 사유	문항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3~223p	문제-문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③ 수동식소화기, 마른 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것 ③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④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로 해야 한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39~239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20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주택·문화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상수 P값은 0.15이다.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H = pD^2 + a$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가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고 대상에 따른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2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셀프용 고정급유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②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0리터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④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 4분 이하로 하고, 경유는 600리터 이하로 하며, 급유시간의 상한은 12분 이하로 한다.	20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상수 P값은 0.15이다.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H = pD^2 + a$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가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고 대상에 따른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2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셀프용 고정급유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②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리터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④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 4분 이하로 하고, 경유는 600리터 이하로 하며, 급유시간의 상한은 12분 이하로 한다.
		수정 사유	문항 오류
262~262p 번호 : 06	문제-본문	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 ² 초과하는 것 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 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 ④ 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 ² 초과하는 것 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 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 ④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70~270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 고속국도의 길어깨 ③ 산림 또는 평야 ④ 지하 또는 해저	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 고속국도의 갓길 ③ 산림 또는 평야 ④ 지하 또는 해저
		수정 사유	문항 오류
271~271p 번호 : 14	문제-본문	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① 안전거리는 기념물 및 보물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 ² 당 16m ³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① 안전거리는 지정문화 유산 및 천연기념물 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 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 ² 당 16m ³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73~273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회의 정관에는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수정 사유	문항 오류
282~282p 최종모의고사	문제-문항	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에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이송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③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할 제조소등 ④ 암반탱크저장소	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에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이송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옥내저장소 ④ 암반탱크저장소
		수정 사유	문항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86~286p 번호 : 18	문제-본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수정 사유	문제 오류																														
335~335p 번호 : 14	해설	14 수 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5개) × 7.8m ³ (260L/min × 30min)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4개) × 13.5m ³ (450L/min × 30min) ∴ 수원 = 옥내 + 옥외 = (1개 × 7.8m ³) + (1개 × 13.5m ³) = 21.3m ³	14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5개) × 7.8m ³ (260L/min × 30min) •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N(최대 4개) × 13.5m ³ (450L/min × 30min): 1개일때는 2개를 설치 ∴ 수원 = 옥내 + 옥외 = (1개 × 7.8m ³) + (2개 × 13.5m ³) = 34.8m ³																														
		수정 사유	해설 오류																														
336~336p 번호 : 23	해설	23 저장 ·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 <table border="1"> <tr> <th>품명</th> <th>황화인</th> <th>과산화나트륨</th> <th>알킬알루미늄</th> <th>나이트로글리셀린</th> </tr> <tr> <th>유별</th> <td>제2류</td> <td>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td> <td>제3류</td> <td>제5류</td> </tr> <tr> <th>주의사항</th> <td>화기주의</td> <td>물기엄금</td> <td>물기엄금</td> <td>화기엄금</td> </tr> </table>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화기엄금	23 저장 ·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 <table border="1"> <tr> <th>품명</th> <th>황화인</th> <th>과산화나트륨</th> <th>알킬알루미늄</th> <th>나이트로글리셀린</th> </tr> <tr> <th>유별</th> <td>제2류</td> <td>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td> <td>제3류</td> <td>제5류</td> </tr> <tr> <th>주의사항</th> <td>화기주의</td> <td>물기엄금</td> <td>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td> <td>화기엄금</td> </tr> </table>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화기엄금																													
품명	황화인	과산화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나이트로글리셀린																													
유별	제2류	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	제3류	제5류																													
주의사항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수정 사유	해설 오류																																
375~375p 정답 및 해설	해설	06 위험물 및 지정수량 <table border="1"> <tr> <th>종류</th> <th>브로민산염류</th> <th>아황화인</th> <th>금속의 수소화물</th> <th>질산</th> </tr> <tr> <th>유별</th> <td>제1류 위험물</td> <td>제2류 위험물</td> <td>제3류 위험물</td> <td>제6류 위험물</td> </tr> <tr> <th>지정수량</th> <td>300킬로그램</td> <td>100킬로그램</td> <td>300킬로그램</td> <td>300킬로그램</td> </tr> </table>	종류	브로민산염류	아황화인	금속의 수소화물	질산	유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06 위험물 및 지정수량 <table border="1"> <tr> <th>종류</th> <th>브로민산염류</th> <th>황화인</th> <th>금속의 수소화물</th> <th>질산</th> </tr> <tr> <th>유별</th> <td>제1류 위험물</td> <td>제2류 위험물</td> <td>제3류 위험물</td> <td>제6류 위험물</td> </tr> <tr> <th>지정수량</th> <td>300킬로그램</td> <td>100킬로그램</td> <td>300킬로그램</td> <td>300킬로그램</td> </tr> </table>	종류	브로민산염류	황화인	금속의 수소화물	질산	유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종류	브로민산염류	아황화인	금속의 수소화물	질산																											
유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종류	브로민산염류	황화인	금속의 수소화물	질산																													
유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수정 사유	해설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76~376p 정답 및 해설	해설	13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시행령 제18조의2) 제조소등의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수동식소화기, 마른 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3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영 제18조의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는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수정 사유	해설 수정
415~415p 정답 및 해설	해설	2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사유	해설 수정
417~417p 정답 및 해설	해설	03 이동탱크저장소 원거리 운행 시 상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주차장 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03 이동탱크저장소 원거리 운행 시 상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주차장 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 도로(갓길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수정 사유	해설 오류
435~435p 정답 및 해설	해설	12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D = 51.1 \sqrt{N}$ 여기서, N : 지정수량의 배수(하이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 : 100킬로그램) D : 거리(m) </div> ∴ 안전거리 : $D = 51.1 \sqrt{1} = 51.1 \times 1 = 51.1\text{m}$	12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D = 51.1 \sqrt{N}$ 여기서, N : 지정수량의 배수(하이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 : 100킬로그램) D : 거리(m) </div> ∴ 안전거리 : $D = 51.1 \sqrt{1} = 51.1 \times 1 = 51.1\text{m}$
		수정 사유	해설 수정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